

의안번호	제 14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9월 일 (제 263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 출 연 월 일	2007년 9월 3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연월일 : 2007년 9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 어업발전 및 수중 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신축하고
- 산림환경연구소가 입업시험·연구를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포 부지의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연구소에 인접한 사유지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매입하며
- 청주지역의 경찰행정 수요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찰서 신설을 지원함 물론 우리도와 경찰청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호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

- 위 치 :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4필지 18,144㎡(세부내역 : 따로 붙임)
 - 건물신축 : 5동 1,790㎡(청사, 연구동, 관리사, 기계실)
 - 구조물 : 5식 2,670㎡(양어시설, 침전조, 저수조 등)
- 사업기간 : 2007. 9 ~ 2008. 12(2년간)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1,700, 도비 1,300)

«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 매입 »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09번지 일원
- 매입규모 : 26필지 29,368㎡(세부내역 : 따로 붙임)
- 사업기간 : 2007. 9 ~ 12(4개월)
- 사 업 비 : 973,094천원(도비)

□ 재산의 취득·처분

« 국·공유재산 교환 »

- 교환시기 : 2007. 9 ~ 12(4개월)
- 교환대상

(단위:㎡,천원)

구분	연번	재 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처 분 (도유)		계 5필지		4,821.00	667,090	
	1	청주 상당 운동 1-16	전	3,514.00	421,680	신설 「남부경찰서」 신축 예정부지
	2	청주 상당 운동 1-22	임야	169.00	11,830	
	3	청주 상당 운동 1-23	전	298.00	35,760	
	4	청주 상당 운동 1-25	전	301.00	36,120	
	5	진천 초평 용정 592-5	대지	539.00	161,700	초평치안센터 부지
취 득 (국유)		계 6필지		2,750.85	802,158	
	1	청주 상당 용정 764	대	365.20	175,529	경찰청 관사 신축 위해 확보한 토지
	2	청주 상당 용정 765	대	403.30	193,584	
	3	청주 상당 용정 766	대	373.40	179,232	
	4	청주 상당 용정 768	주차장	153.95	50,803	
	5	충주 용탄 1095	구거	478.00	57,460	내수면연구소 부지
	6	청주 흥덕 분평 552	답	977.00	145,550	비축토지

※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되 교환차액은 현금 보충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계	3,973,094	-	802,158	667,090
○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3,000,000	-	-	-
○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매입	973,094	-	-	-
○ 국·공유재산 교환	-	-	802,158	667,090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 취득(매입) 예정토지 내역

-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부지 : 붙임
- 임업 연구·시험포 부지 조성부지 : 붙임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7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5)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취득	1 건	2,750.85	802,158			
		처분	1 건	4,821.00	667,090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청주 상당 용정 764외 5필지	2,750.85	802,058	07.9-12	상호 점유재산 취득 국가행정 지원	경 찰 청
		처분	청주 상당 운동 1-16외 4필지	4,821.00	667,090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취득(매입) 예정토지 내역

1.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부지

(단위 : m²,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목	지 적	추정가액	비 고
	계		18,144.0	508,032,000	
1	옥천 청산 신매 667-2	학교	10,001.0	280,028,000	신서초폐교부지(교육청)
2	옥천 청산 신매 667-4	학교	756.0	21,168,000	"
3	옥천 청산 신매 13-1	학교	2,480.0	69,440,000	"
4	옥천 청산 신매 738-13	학교	4,907.0	137,396,000	신서초폐교부지(교육부)

2. 임업 연구·시험포 조성부지

(단위 : m²,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목	지 적	추정가액	비 고
	계		29,368.0	973,093,800	
1	청원 미원 미원 109	전	1,956.0	65,721,600	시험포 예정(관리지역)
2	청원 미원 미원 110	전	198.0	6,237,000	"
3	청원 미원 미원 111-11	전	917.0	28,885,500	"
4	청원 미원 미원 110-11	전	496.0	15,624,000	연계도로 및 시험포(관리지역)
5	청원 미원 미원 110-12	전	175.0	5,512,500	"
6	청원 미원 미원 110-14	전	1,494.0	47,061,000	"
7	청원 미원 미원 110-16	전	436.0	13,734,000	시험포 예정(관리지역)
8	청원 미원 미원 111-1	전	192.0	6,048,000	"
9	청원 미원 미원 111-3	전	588.0	18,522,000	"
10	청원 미원 미원 111-5	전	668.0	21,042,000	"
11	청원 미원 미원 111-9	전	479.0	15,088,500	"
12	청원 미원 미원 156-2	전	2,995.0	106,921,500	"
13	청원 미원 미원 156-10	전	265.0	9,460,500	"
14	청원 미원 미원 171	전	1,593.0	55,197,450	"
15	청원 미원 미원 159	전	1,856.0	64,310,400	"
16	청원 미원 미원 160	전	1,098.0	38,045,700	"
17	청원 미원 미원 162	전	1,349.0	42,493,500	"
18	청원 미원 미원 164	전	2,316.0	72,954,000	"
19	청원 미원 미원 168	답	1,788.0	56,322,000	"
20	청원 미원 미원 163-2	전	1,398.0	44,037,000	"
21	청원 미원 미원 163-3	전	526.0	16,569,000	"
22	청원 미원 미원 152	전	1,666.0	57,726,900	"
23	청원 미원 미원 152-1	전	175.0	6,063,750	"
24	청원 미원 미원 110-7	전	1,544.0	48,636,000	"
25	청원 미원 미원 153	전	724.0	25,086,600	"
26	청원 미원 미원 155	답	2,476.0	85,793,400	"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35조 제 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0 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